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단1195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 종결 2018. 3. 15

판결 선고 2018.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80,243,02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포천시 C 전 992㎡에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7. 6. 20. 접수 제222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큰딸 D, 작은딸 E을 두고 있고, 피고는 E의 남편으로 원고의 둘째 사위 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포천시 C 전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6. 16.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 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0일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7. 9. 4.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농협은행에 대한 원고의 대출 원리금 80,243,024원을 모두 상환하고, 같은 달 5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남편과 사별하고, 큰딸 집에서 살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8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자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 부부는 원고에게 "피고가 대출금 이자도 내고, 원고를 잘 부양하겠다.

돌아가시면 장지도 마련해 정성껏 장례를 치러 주겠다."라고 말하여, 원고는 2017. 6. 16. 피고

부부가 제시한 조건을 수락하고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부부에게 증여하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조건부 증여계약을 하고, 같은 달 25일경 피고 부부 집에 들어가 같이 살았다.

그러던 중 둘째 딸 E이 2017. 7. 18. 원고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여 원고는 이를 피해 큰딸 집으로 피신하였으나 여전히 E으로부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들었다.

결국 피고 부부는 원고에게 약속한 증여에 따른 조건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대위변제금 80,243,024원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사람은 피고이지 E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한 대출금 이자 납부가 어려워 피고에게 위 채무를 인수시킬 목적에서 이 사건 토지를증여한 것이다.

피고가 원고를 모시면서 부양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지 않았고, 더욱이E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욕설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토지 증여에불만을 품은 원고의 큰딸이 주도하고 있다.

나. 판단

1)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민법 제554조),당사자가 체결한 증여계약의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은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하지만, 증여에상대부담(민법 제561조)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해당하므로,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2010다5878 판결 참조).

2) 이 사건 증여가 원고를 부양하는 것을 상대부담으로 하는 증여인 점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가 낸 증거는 진단서(갑 제1호증),고소장(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증언이 있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원고를부양하는 것을 상대부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가) 진단서 기재 내용은 원고가 변론에서 진술한 폭행의 내용과 매우 다르다.

검사는 2018. 3. 14. 원고의 존속폭행 고소사건에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나) 원고는 5년 넘게 같이 산 큰딸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농협은행 대출금을 주고 원리금을 내게 하였으나 대출이자 납부가 지체하자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고,D와 의논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는 대신,피고로 하여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였다.(다) 원고가 피고 부부 집에서 3주일가량 지내다가 다시 큰딸 집에 돌아오긴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를 차로 터미널까지

모시고 차표를 사주며 배웅하였고, 원고는 큰딸집에서 E에게 잘 도착하였다고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윤도근